

1. 운 용 총 칙

회계년도 : 2010년
 예산차수 : 본예산
 회계구분 : 식품진흥기금

① 기금설치 개요

- (1) 설치근거 :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, 제62조
- (2) 설치목적 :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총당
- (3) 설치년도 : 1991년

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(1) 기금사업의 목표 :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업 및 활동지원
- (2)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 :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

③ 기금조성 및 운용

(1)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09년도 말 현재액 ㉑	2010년도 조성계획			2010년도 말 현재액㉒ = ㉓ + ㉑	비 고
	수입 ㉓	지출 ㉔	증감 ㉕ = ㉓ - ㉔		
7,356,194	4,272,000	7,044,590	△2,772,590	4,583,604	

- (2) 자원조성 : 식품위생법 제82조,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
- (3) 지원기준 :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
- (4) 지원대상 :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용자사업,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교육, 홍보 등